#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40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 강대식 · 유용원 · 고동진

백종헌 • 조지연 • 이인선

박덕흠 • 박준태 • 김상훈

최은석 · 김장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가용한 범위 내에서만 격지·오지 근무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거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은 매우 부족하여 의원면직하는 경우가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 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률 제 호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다)에게"를 "같다) 및 군무원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인"을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으로, "군인"을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 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같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군무원(격지・오지 또는 도서 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지역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같다)에게--------군인 및 군무원----.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 ② -----제1항-----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 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 --군인 및 군무원-----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